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03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52960 부당이득금

원 고 A

피 고 1. B

2. C

3. 주식회사 D

4. E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0.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710,132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4.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E는 별지 1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03

시를 하고, [redacted]국(소관: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고,

라.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2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redacted]국(소관: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F는 2009. 3. 16. 소외 G교회에게 [redacted]시 H 대 75㎡ 중 75분의 33 지분과 I 대 5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의 명의가, 2009. 12. 18. 소외 J교회(이하 'J교회'라 한다)로 변경되었다가 2009. 12. 22. G교회로 다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38222호, 38223호로 J교회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그 후 같은 등기소 2012. 10. 9. 접수 제40298호로 소외 K교회(이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03

'K교회'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2012.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2. 채무자 L[1], 채권최고액 7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의 신청으로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M,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되었고, 원고가 2015.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 받았으며,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2015. 9. 10. 진행된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75,000,000원, 피고 C에게 710,132원, 피고 주식회사 D에 525,438원, 피고 E에게 512,1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B은 2015. 9. 10., 피고 C은 2015. 9. 14. 위 각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의 위 각 배당금은 별지 기재와 같이 공탁되었다.

사. 한편, G교회는 J교회와 K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와 2012.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단10897호)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9. 2. '원고(G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에도 등기명의인인 원고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져 위 표시변경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J교회는 위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인 무효인 표시변경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K교회는 2009.

1) K교회의 대표자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03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2. 26. 항소취하 간주로 확정되었다.

아. G교회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수[redacted]지방법원 2016가단507792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8. '무효인 2009. 10. 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A)는 원고(G교회)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0. 5. 확정되었다.

자. 원고가 K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6. 11. 1. K교회에 도달하였다.

차. 2017. 3. 20.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물상보증인 K교회는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7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5. 24.자), [redacted]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7. 18.자),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17. 11. 14.자),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는 기초사실 기재 각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K교회를 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03

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1차책임자인 K교회가 무자력 내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641 판결 참조), 민법 제57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2차책임자로서 배당채권자인 피고 B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금 수령일인 2015. 9.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710,132원 및 이에 대한 배당금 수령일인 2015. 9.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E는 별지 1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redacted]국(소관: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D은 별지 2 기재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redacted]국(소관: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관련 사건(이 법원 2011가합2625 판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J교회의 소유임이 확인되었으므로,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7. 6. 12.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가15의 기재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계쟁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상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나아가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03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03

공탁금의 표시

1. 공탁번호 :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5년금제2495호

 공탁자 : 법원주사 [redacted]

 피공탁자 : [redacted]

 공탁금 : 512,155원

 공탁일 : 2015. 9. 14.

2. 공탁번호 :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5년금제2496호

 공탁자 : 법원주사 [redacted]

 피공탁자 : 주식회사 [redacted]

 공탁금 : 525,466원

 공탁일 : 2015. 9. 14. 끝.